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829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 부여(윤호중의원안)	2

I. 개요

1.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82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호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22.

(3) 회 부 일 : 2024. 10.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시에서 자택의 남는 방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단기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공유숙박’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공유숙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이용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과 달리,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유숙박업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세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제7항 및 제53조의2제8항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거래명세 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 부여(윤호중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특례(제53조의2) ○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 광고 게재 용역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 등 ○ 국외사업자가 제3자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함. ○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부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간편사업자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확정신고기한 후 5년 간 보관해야 함. ○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에게 거래명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간편사업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명세서를 제출 < 신 설 >	□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한 분기별 거래명세 제출의무 부여 및 국세청장의 시정명령 근거 신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함.</u> ○ <u>국세청장 등은 관련 명세를 제출해</u>

현 행	개 정 안
	<u>야하는 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u>

* 윤호중의원안 2024. 10. 22. 발의(의안번호 4829)

□ 개정안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의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사업자에게 관련 명세를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국세청장 등은 관련 명세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관련 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2000년대 이후 게임·소프트웨어·모바일 앱 등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함)이 오픈마켓 및 플랫폼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국내 개발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국외 개발자(법인 포함)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2014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해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¹⁾를 신설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1)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자 등²⁾(이하 “국외사업자”라 함)을 위하여 간편사업자등록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국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부과하였고, 2019년 7월부터는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개용역도 과세대상에 추가하였음.

□ 그런데 최근 도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빈 방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단기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공유숙박’이 활성화되면서 숙박제공자와 그 이용자를 연

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2.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 ②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제3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하게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60조 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대리납부)

④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용역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결해주는 중개 플랫폼 이용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숙박제공자의 사업자 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국내 공유 숙박 플랫폼과 달리,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제공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공유숙박 제공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유숙박업에 대한 세원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³⁾.

- 개정안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사업자의 관련 명세 제출의무를 신설하고, 국세청장 등은 관련 명세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제출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숙박제공자의 탈세를 예방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의 취지는 숙박제공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외국계 사업자에 대한 거래명세 제출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나, 개정안에 따르면 간편사업

3) 출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등록을 한 국외사업자가 분기별로 모든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둘째, 부가가치세의 탈세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과 달리 외국계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제공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사 플랫폼에 등록을 허용하는 것에서 기인하므로,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하여금 숙박제공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미국의 뉴욕시는 30일 미만의 단기로 집을 통째로 빌려주는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 임대수익, 계좌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⁴⁾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60

4) 「뉴욕도, 한국도 에어비앤비 ‘규제’ 고민…도심 숙박 잘했는데 불법?」 (경향신문, 2023. 9. 7.)